

● 제322회 ●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4. 2. 2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 최기찬 의원 대표 발의 】

의안번호 1601

I. 조례안 개요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가. 제 안 자 : 최기찬 의원외 14명

나. 제 안 일 : 2024. 2. 5.

다. 회 부 일 : 2024. 2.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이 시설 설립 초기에는 각각 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등의 역할과 여성의 창업지원이라는 역할에서 최근에는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과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이라는 역할로 크게 변화되어 조례에도 현실에 맞게 기능과 용어를 수정·반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존 ‘스페이스살림’이라는 명칭에는 여성창업가를 ‘살리’는 창업지원시설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 변화된 시설의

성격에 맞게 양육자와 아이를 위한 양육친화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 ‘서울가족플라자’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서울여성플라자’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나. ‘스페이스 살림’의 정의와 기능을 변경하여 규정함

다. 조례에서 기존 사용하던 명칭인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함

라. 용어 통일을 위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사용하던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변경하는 부칙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양성평등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없음

II.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주병준)

1 조례안의 개요

-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의 고유사무인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살림의 운영에 있어 역할과 기능이 변경됨에 따라 사무수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이를 통한 안정성의 확보와 사무의 본질적인 사항에 대한 재규정을 하고자 제안되었음.

<서울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현황>

구분	서울여성플라자		스페이스살림
위치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대방동)		동작구 노량진로 10 (대방동)
규모	지상 5층, 지하 3층(연면적 22,520㎡)		지상 2층, 지하 2층(연면적 14,710㎡) (경제정책실 분임관리공간(3,247㎡) 제외)
건립 기간	1999.11. ~ 2002.6.		2017.12. ~ 2020.10.
주요 시설	대관 공간	국제회의장, 아트홀, 시청각실, 아트컬리지	다목적홀, 교육장, 세미나실
	사무 공간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단체 사무실(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등)	여성가족재단 및 입주기관 사무실(거점2호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등)
	편의 시설	다목적라운지, 스포츠센터, 아기쉼터, 주차장 등	엄마아빠VIP존(3호·4호),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장난감도서관, 식당, 커피전문점 등

2 주요사항 검토

□ 시설의 명칭 및 내용 변경 관련(안 제4조제1호 및 제2호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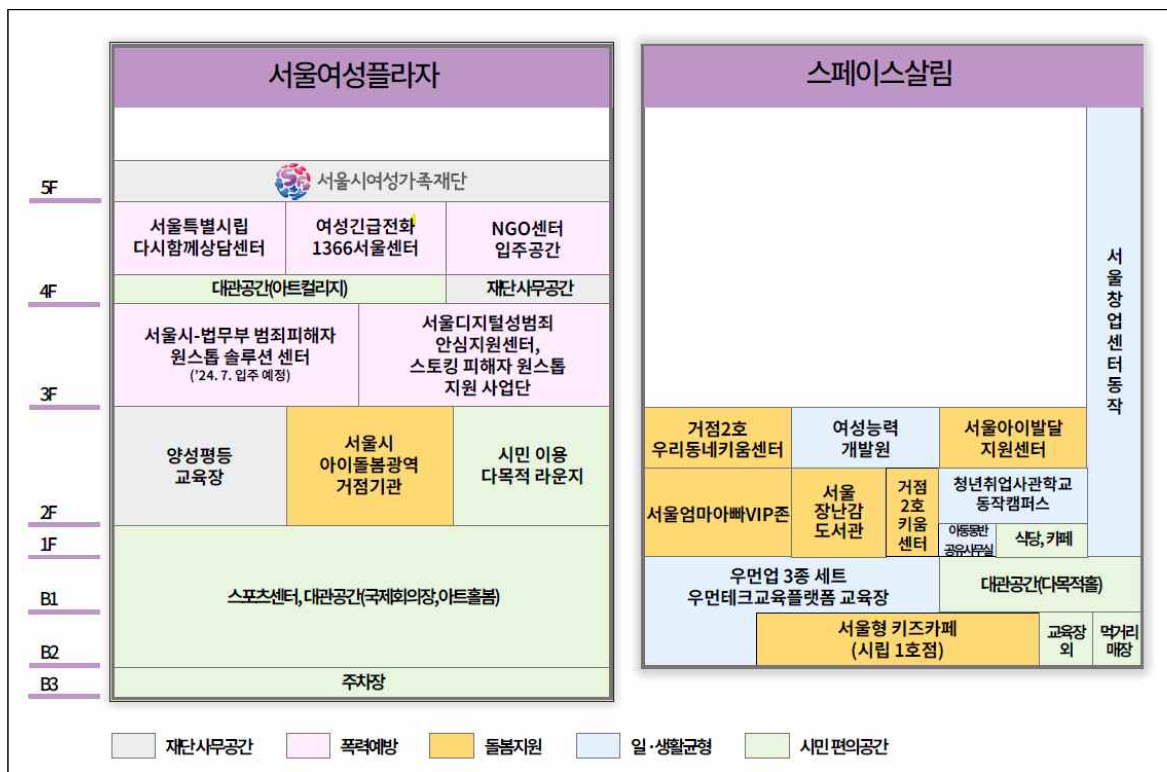
- 현행 조례 제4조는 서울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여성관련시설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 제4조제1호에 따른 여성플라자와 안 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변경·조정된 기능과 역할을 반영하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관리위탁하고 있는 두 시설의 명칭을 각각 여성과 가족을 상징하는 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로 정하여 공간에 대한 시민의 직관적 이해도를 제고하고, 시설간 조화와 연계성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음.

현행	개정안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설치·운영 하는 여성관련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4조(여성관련시설의 종류) --- ----- ----- -----.
1. 여성플라자 : <u>여성의 직업능력 개발, 상호 교류 활성화, 이에 부수하는 공간 지원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u>	1. ----- <u>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성의 직업 능력 개발</u> ----- -----
1의2. <u>스페이스 살림: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u>	1의2. <u>서울가족플라자 :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u>

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 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 7. (생 략)	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 7. (현행과 같음)
--	--

- 시설 명칭과 관련하여 개정안을 각각 여성플라자와 가족플라자로 하거나, 서울여성플라자와 서울가족플라자로 보다 통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 공간 현황>



- 한편 위의 그림의 시설별 공간 현황과 같이 안 제4조제1호는 여성 플라자를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 폭력 예방 및 피해지원, 여

성의 직업 능력 개발 등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을 목적하는 시설로, 안 제4조제1의2호는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를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는 여성플라자에는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다시함께상담센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사업단,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가 입주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여성가족재단에서 양성평등 정책 개발 및 여성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우먼업프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음. 다만 재단이 가진 고유의 기능¹⁾인 교류 활성화와 이에 부수하는 공간지원 업무(대관업무)의 중요성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에는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장난감도서관, 우리동네키움센터, 서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엄마아빠VIP존,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이 입주하여 있는데, 우먼테크 교육라운지나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의 사무는 일·생활 균형과는 일부 다른 목적을 가진 사무로 판단되어 조례개정에 따라 업무효율과 이용시민 편의를 위해 기능과 역할에 따른 사무공간의 재분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구체적 사업규정과 관련: 여성가족플라자(안 제5조 관련)

- 현행 조례의 체계 상 개정안 제4조제1호에 따라 동 개정안 제5조도 개정되어야 하는 바, 이에 따라 개정안 제5조는 여성플라자의

1)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단의 사업)

6. 국내외 여성·아동·가족·보육 분야 기관과의 연계·교류 및 민간 협력

명칭 및 기능을 재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 제5조에서 여성플라자의 기능은 안 제4조제1호에서 규정한 대로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안 제5조제6호),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안 제5조제7호)와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교류활성화와 공간지원 업무는 축소하여 제시하고 있음(안 제5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생략)	제5조(여성플라자의 명칭 및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여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여성 역량강화를 위한 여성 교육 공간 지원	2. ----- -- 지원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신설>	6. 양성평등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신설>	7.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6. (생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 구체적 사업규정과 관련: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
(안 제5조의2 관련)

- 개정안에서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의 경우 명칭과

기능 모두 변경되며 변경의 폭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간의 서울가족플라자와 여성플라자의 기능 및 공간변화를 반영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볼수 있음.

현행	개정안
<u>제5조의2(스페이스 살림의 기능)</u> <u>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창업공간, 자금, 장비 등 여성 창업자 육성에 필요한 지원</u> <u>2. 여성 창업자 판로 개척 및 투자 유치 지원</u> <u>3.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자녀 돌봄 서비스 제공</u> <u>4. 가족 소통 활성화 사업 추진</u> <u>5. 정보통신분야 성별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창작활동 지원</u> <u>6. 그 밖에 여성창업 활성화, 성평등·돌봄 환경 조성 및 여성·가족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u>	<u>제5조의2(서울가족플라자의 기능)</u> <u>제4조제1의2호에 따른 서울가족플라자의 주요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u> <u>1. 양육자의 돌봄 지원을 위한 양육친화 인프라 및 프로그램 제공</u> <u>2. 양육자와 아동을 위한 편의 휴식·놀이·돌봄 전용 공간 제공</u> <u>3. 영유아발달 지원 및 보편적 놀이 기회 제공</u> <u>4. 여성·청년의 경력진입 및 경력개발 지원</u> <u>5. 양육자의 일·생활 균형 및 일상회복을 위한 심리지원</u> <u>6. 그 밖에 양육자의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u>

울아이발달지원센터, 서울시 여성능력개발원, 엄마 아빠 VIP존, 서울형 키즈카페, 서울 장난감 도서관과 식당 및 커피전문점이 입주해 있어 대부분 일시적 이용시설에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

- 향후 서울가족플라자는 일시적 돌봄기능 제공에서 더 나아가 여성취업특화시설로서 유관기관 집적을 통한 일·돌봄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한편 여성플라자의 경우 성매매 피해 회복 등 여성복지 분야로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이 다수 입주해 있고 이를 통해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복지시설, 서비스 간 집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 이용료 부과 (안 제18조 및 제19조 관련)

-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³⁾,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에 대한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

3)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수할 수 있고, 이처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 스페이스 살림을 서울가족플라자로 그 명칭을 바꾸고, 이용료의 부과 및 징수와 관련한 사항을 재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여성관련시설의 교육과정 또는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료의 부과·징수)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1의2. <u>스페이스 살림</u> : 별표 6의2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1의2. <u>서울가족플라자</u> : ----- -----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동 개정안은 서울가족플라자(현행 스페이스 살림)의 창업기능을 제외하고, [별표6의2]를 개정하여 창업공간의 이용료 규정을 삭제하고 있음.

- 이는 개정안의 목적이 해당 시설의 현재 기능에 맞춰 창업 및 연수 기능을 제외하고, 양육자 중심의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시설로 바꾸고자 하는 안이기 때문에 동 개정안 내에서 이용료 부과기준에 대한 개정을 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별표6의2] 스페이스 살림 이용료 부과 기준(제18조제1항 관련)

구 분		이용료 부과·징수 기준(단위)	
		현행	개정안
창업공간 이용료	창업공간	2,280원~20,000원(㎡당/1개월)	(삭제)
기본시설 이용료	공유좌석	10,000원~50,000원(1개월)	10,000원~50,000원(1개월)
	공유부엌	7,500원~30,000원(1시간)	7,500원~30,000원(1시간)
	다목적홀	52,800원~160,000원(1시간)	52,800원~160,000원(1시간)
	교육장	25,000원~65,000원(1시간)	25,000원~65,000원(1시간)
연수시설 이용료		40,000원~230,000원(1박)	(삭제)

- 또한 동 개정안은 이용료 감면규정에서 연수시설 이용료 감면사항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과거 스페이스 살림 내 연수시설로 이용되던 f존이 현재 창업시설로서 경제정책실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반영한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생략)	제19조(이용료의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스페이스 살림의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창업공간은 제외한다.

1. 여성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가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자치구는 제외한다):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2.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기본시설 및 부속설비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줄인다. 다만, 연수시설의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

3.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여성의 권익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

② -----

----- 서울가족 플라자-----
-----.
-----.

1. 양육자의 일·돌봄 지원을 -----

-----.
<단서 삭제>

2. -----

-----.
<단서 삭제>

<삭 제>

<u>간단체가 연수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20을 줄인다.</u>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	-------------------

□ 부칙을 통한 타조례 개정(안 부칙 제2조)

-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9호에 스페이스 살림 관리·운영 주체인 여성가족재단의 사업으로 규정된 “스페이스 살림 운영 및 관리”를 “서울가족플라자 운영 및 관리”로 변경하였음. 이는 변경된 시설명을 반영하여 서울가족플라자에 대한 여성가족재단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3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 ----- ----- -----.
1. ~ 8.(생략)	1. ~ 8.(현행과 같음)
9. <u>스페이스 살림</u> 의 운영 및 관리	9. <u>서울가족플라자</u> ----- --
10. ~ 12. (생략)	10. ~ 12.(현행과 같음)

□ 집행기관 의견

- 집행기관은 개정안에 대해 여성플라자 및 스페이스 살림의 주요기능이 시설 초기에서 변화됨에 따라 그 명칭과 기능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도 이견이 없다고 하였음.

4 종합의견

- 본 개정안은 여성창업지원기관으로서의 스페이스 살림에서 돌봄 및 일·생활 균형 지원 중심으로의 기능 및 공간변화를 반영하고자 스페이스 살림의 명칭과 스페이스 살림 및 여성플라자의 기능을 재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타당성이 인정됨.
- 명칭 및 기능조정에 따른 이용료 부과 규정도 일관되게 개정하는 것도 타당함.